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,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에 “안전한 식재료”의 내용을 보완하고 “유전자변형식품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(안 제2조)
- 제3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수립)”을 “(교육감의 책무)”로 변경함 (안 제3조)
- 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4조의2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,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 제5호 ‘안전한 식재료’의 정의에 ‘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’을 추가하고, 제7호에 ‘유전자변형식품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.
- 안 제3조 조문의 제목을 ‘교육감의 책무’로 변경하였고,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급식에 유전자 변형 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의 개정 전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류, 두부, 콩나물을 Non-Gmo 제품으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2021년도 약 16억원)을 지원하고 있었음.
-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